

학생복지시설 운영규정

제 정 2018. 2
개 정 2023.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교내에 설치하는 각종 학생 편의·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3.08)

제2조 (복지시설의 종류) 이 규정에서 다루는 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3.03.08)

1.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숙사

나. 학생식당

다. 체육시설

라. 학생자치시설

마. 기타 편의시설(문화시설)

2. 제1호 이외에 기타 시설은 학생복지위원장이 지정한 시설

제3조 (운영의 기본방향) ① 복지시설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다.(개정 2023.03.08)

② 복지시설의 혜택은 전교생에게 주어지도록 한다.(개정 2023.03.08)

③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개정 2023.03.08)

제4조 (관장부서) ① 제3조의 기본방향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하며,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공사에 관한 사항 등은 관리팀, 시설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23.03.08)

② 복지시설의 유지보수관리 및 청소는 관리팀에서 담당한다.

제5조 (학생복지위원회) ① 복지시설 사용의 기본방침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두며, 학생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시설의 계약, 임대, 이용료, 운영비 등의 책정과 필요한 관리 및 운영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신설 2023.03.08)

제6조 (이용자) 복지시설은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3.03.08)

제7조 (이용시간) 복지시설 이용시간은 각 시설별 사용기준에 준하며, 공휴일에는 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행사,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개방 할 수 있다.(개정 2023.03.08)

제8조 (이용의 제한) 다음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9조 (용도변경) 각종 복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복지시설 이용자는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